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보 도 자 료			http://www.motie.go.kr http://www.kipo.go.kr
보도일시	2015. 4. 10.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배포일시	'15.4.9(목) 09:00	담당부서	산업부 FTA무역규범과 특허청 다자기구팀
담당과장	이경식(044-203-5820) 엄태민(042-481-8197)	담 당 자	경민수 사무관(044-203-5825) 황상동 사무관(042-481-5071)

자유무역협정(FTA)으로 특허·상표를 보호받는다

- 「한중 및 한베 FTA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」 개최 -

- 4.10일 경주, 17일 창원, 20일 오창, 23일 군산, 30일 광주 등 5개 지역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와 **특허청**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 및 베트남과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(이하 "FTA")을 통해 특허권과 상표권을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.

○ 기존에 중소기업이 FTA 협정문 중에서 '지식재산권 보호'에 대한 규정을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더라도, 법률 해석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FTA 콜센터(☎ 1380) 등 FTA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통해서도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곤란하여 아쉬움이 있었다.

○ 이번 지식재산권 지역설명회는 FTA 협정문 중에서도 "중국과 베트남 시장에서의 특허·상표 보호"에 특화하여 개최되는 최초의 설명회로서,

- 설명회에 참석하는 중소기업은 중국·베트남 기업의 유명상표 선점 행위, 짝퉁 상품 유통, 권리구제 지연 등 비관세장벽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상세하게 질의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기업의 FTA 활용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창원, 오창, 군산 등 지역의 산업 거점에서 총 5차례*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중국·베트남 수출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이 FTA를 통해서 지식재산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청취하고 소송 방법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.

* 지역 설명회 일정 : ▼ 4.10일 경주(대구·경주소재 기업 대상), ▼ 4.17일 창원, ▼ 4.20일 오창, ▼ 4.23일 군산, ▼ 4.30일 광주

○ 특히, 중국 및 베트남과의 FTA 협상에 실제 참여했던 정부 협상 담당자가 특허·상표권 보호 조항의 내용 및 취지를 생생하게 소개하고,

○ 특허청 및 지식재산연구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수출하면서 자주 겪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수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갖추고 FTA 활용 의지도 높일 수 있도록 설명회, 기업 상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면서 기업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.

○ 이번 지역설명회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사항들은 올해 6월말까지 『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지식재산보호 매뉴얼』 형태로 발간하여 중소기업들이 중국과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질적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[붙임1] 「한-중 및 한-베 자유무역협정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」 계획
[붙임2] 상표권 및 특허권 관련 Q&A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무역규범과 한철희 팀장(☎ 044-203-5821), 경민수 사무관(☎ 044-203-58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「한-중 및 한-베 자유무역협정 지식재산권 설명회」 계획

1. 목 적

□ 한·중, 한·베트남 FTA에서 높은 수준으로 체결된 지식재산권 챕터의 내용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

□ 우리 기업이 중국, 베트남에서 경험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제공

2. 개 요

□ 주 최 : 산업통상자원부, 특허청, 중소기업청

□ 주 관 : 한국산업단지공단, 충북지방중소기업청,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, 지식재산연구원

□ 대 상 : 국가·일반산업단지 입주 수출기업 등 지역 중소기업

3. 일 정

일 시	장 소	주 최	주관 / 참석 문의
4.10일(금) 17:00	경주 (블루원리조트)	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	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 본부 (문의 : 070-8895-7755)
4.17일(금) 14:00	창원 (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지사)	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	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지사 (문의 : 070-8895-7802)
4.20일(월) 14:00	오창 (충북지방중기청)	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중소기업청	충북지방중소기업청 (문의 : 043-230-5375)
4.23일(목) 14:00	군산 (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)	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	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(문의 : 070-8895-7965)
4.30일(목) 14:00	광주 (광주테크노파크)	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중소기업청	광주·전남지방중소기업청 (문의 : 062-360-9190)

붙임 2 상표권 및 특허권 관련 Q&A

1. 우리나라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를 중국이나 베트남 회사가 현지에서 상표등록을 하고 사용 중이라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?

□ 한·중 FTA에서는 중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표일지라도 유명한 상표일 경우에는 일정한 보호를 해주기로 합의하였음

○ ▽유명상표와 똑같거나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키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상표를, ▽그 유명상표와 관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용하여, ▽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,

○ 중국의 주무 부처는 그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며, 이미 등록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, 그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

□ 한·베트남 FTA에서도 한-중 FTA와 대동소이한 내용이 반영되었음

2.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충분한 액수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는지?

□ 한·중 FTA에서는 지재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권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으되, 실제 손해액 입증이 힘들면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의함

○ 즉, 실제 손해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면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손해액에 못미치는 액수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받는 경우가 많은 바,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실제 손해액에 가까운 액수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됨

3. 우리나라에서 과자에 사용되는 유명상표를 중국 회사가 아동용 완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을 했다면 대응방안이 있는지?

□ 한·중 FTA에서는 ①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상표를 ② 해당 유명상표와 관련이 있는 상품·서비스에 대해 사용하여, ③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을 때, 그 표장의 등록거절·등록취소·사용금지를 규정하였음

□ 한·베 FTA에서는 ① 유명상표와 동일·유사한 상표를 ② 해당 유명상표에 관한 상품·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·서비스에 사용하여 ③ 선행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, 상표권자와의 관련성을 오인 혹은 기만하거나 명성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을 때, 그 표장의 등록거절·등록취소·사용금지를 규정하였음

□ 따라서, 과자에 사용되는 우리나라 기업의 미등록 혹은 등록 유명상표를 중국 회사가 아동용 완구에 사용하기 위해 현지에서 등록을 완료한 경우,

○ 한-중 FTA에 따라 중국 주무관청은 해당 과자와 아동용 완구가 관련이 있는 상품일 경우에 상표 등록거절, 등록 취소, 사용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권리자는 관련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

○ 한-베 FTA에 따라 베트남 주무관청은 해당 과자와 아동용 완구가 동일·유사한 상품일 경우 상표 등록거절, 등록 취소, 사용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권리자는 관련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

4.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특허의 조속한 등록을 위해 우선심사제도가 필요한데, 관련 제도가 반영되었는지?

□ 한·중 및 한-베 FTA에서 각 당사국은 특허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, 특허 심사 지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음

□ 향후 중국과 베트남에서 특허 우선심사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FTA 이행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임

5. 중국 기업이 실용신안권을 남용하여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들이 있는데,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?

□ 한-중 FTA에서는 실용신안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법원이 원고(실용신안 권리자)에게 특허당국에 의해 작성된 실용신안 평가보고서를 침해증거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

○ 즉, 중국은 실용신안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록하는 무심사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, 중국기업이 이를 악용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 후 소송 위협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가 있어 우리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기도 하는 바,

○ 중국기업이 실용신안을 근거로 우리 기업에게 소송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음

6. 침해 소송에서 실손해액을 입증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, 손해배상액 청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?

□ 한·중 FTA에서는 지재권 침해에 대해 '권리자의 실손해액' 혹은 '침해자의 이익'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 실손해액을 입증하기 힘들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

□ 또한, 한·중 및 한·베 FTA에서 상표위조 및 저작권·저작인접권 침해 관련 민사 소송에서 권리자가 구체적 실손해배상 대신 법령에 미리 규정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"법정손해배상제도"를 도입하였음

○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되도록 규정하였음

참고 : 한·중·베 국내법에 규정된 법정손해배상액

o 우리나라

- 저작권 침해 : 1천만원 이하
 (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)
- 상표권 침해 : 5천만원 이하

o 중국

- 저작권 침해 : 1만위안 ~ 100만위안
- 상표권 침해 : 200만위안 이하

o 베트남

- 모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5억동(약2,600만원)

7.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의 경우, 침해물품 뿐 아니라 재료나 도구의 압류도 필요한데, FTA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는지?

□ 한·중 FTA에서는 침해 물품에 대한 압류 뿐 아니라 침해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도구에 대한 압류 권한을 규정함

○ 또한, 상표위조 물품 및 저작권 침해물품의 경우,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및 도구의 몰수 및 폐기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하였음

□ 한·베 FTA에서는 저작권·저작인접권 침해 및 상표 위조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침해 물품과 침해 행위와 관련된 재료나 도구에 대한 압류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하였음

8. 짝퉁 제품 단속시에 증거 서류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데,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는지?

□ 한·중 FTA에서는 저작권·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위조에 관한 민사소송시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문서 증거의 압류 권한을 사법당국이 갖도록 규정하였음

□ 한·베 FTA에서는 상표 위조의 경우에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문서 증거의 압류 권한을 규정하였음

9.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비밀 자료가 피고측 변호사에 의해 유출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대처 방안이 있는지?

□ 한·중 및 한·베 FTA에서는 민사재판 당사자, 변호인, 전문가 등 소송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와 관련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함

○ 따라서, 피고측 변호사가 특허침해 소송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자료를 유출한 경우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

10. 짝퉁 제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외국 주요 항구를 통해 환적되어 제3국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데, 이에 대한 대책은?

□ 한·중 FTA에서는 침해물품이 수입, 수출, 환적되거나 자유무역지대 혹은 보세창고에 위치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권리자가 세관에 침해물품 통관보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음

○ 즉, 권리자가 충분한 정보를 통관당국에 제공할 경우 통관보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였고,

○ 세관이 침해물품 적발시 권리자에게 관련 정보를 통지하여 통관보류 신청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음

11.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?

□ 한·중 및 한·베 FTA에서는 잠정조치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였음

○ 지재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자가 집행당국에 잠정조치를 요청할 경우, 집행당국은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고,

○ 잠정조치를 적용할 때 집행당국은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임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권리자에게 명령할 수 있으며,

○ 침해자 보호 및 권리남용 방지 등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담보 또는 보증 제공을 권리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

12.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발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?

□ 한·중 FTA에서는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침해로부터 얻은 모든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하였음

13. 권리자에게 통관보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있는지?

□ 한·베 FTA에서는 세관당국이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을 유치하거나 압류했을 때,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권리자에게 관련 정보를 통지하여 통관보류 신청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